

2026 전문무역상사 신청기업 지정 자격별 제출서류 안내(필독)

한국무역협회

1 공통 및 해당업체 제출서류

① 공통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제출서류는 첨부파일로 온라인 제출

- 1) 2026년 전문무역상사 지정 신청서 1부 (전문무역상사 ctc.kita.net 또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kita.net 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 별지 제1호 서식(한글 신청서는 예시로 작성 및 제출 필요 없음)
- 2) 전문무역상사 지정 신청 협약서 1부(법인 또는 개인 인감 날인 필수)
* 별지 제2호 서식
- 3) 전문무역상사 운영을 위한 정보제공 활용동의서 1부(법인 또는 개인 인감 날인 필수)
* 별지 제3호 서식
- 4) 기업 신용조사 동의서 1부(법인 또는 개인 인감 날인 필수)
* 별지 제4-1호 또는 제4-2호 서식(선택 1,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업 신용등급 확인용)
- 5) 법인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7) 기업 로고 이미지 파일(*보유 시만 고화질 파일 별첨 요망)

② 해당업체 추가 제출서류(대기업 및 재외동포기업은 해당없음)

- 1) 중소기업에 해당될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온라인 신청, 발급 제출
- 2) 중견기업에 해당될 경우 중견기업확인서 제출
- 한국중견기업연합회(<https://www.mme.or.kr/PGIC0010.do>) 온라인 신청, 발급 제출

2 지정 자격별 제출 서류

- ① 전년도(25) 수출실적 또는 최근 3년간(23~25)의 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他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수출 비중이 20% 이상인 자
- ② 전년도(25) 수출실적 또는 최근 3년간(23~25)의 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억 달러 이상인자로서 무역거래를 주로 영위하는 자

□ 추가 제출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업체만 제출

- 1) 로컬 등 기타 수출실적 증빙 (용역/전자적무출물, 외화영수부 수출 등)
※ 단, 신청기업의 **직수출(수출 신고) 실적만으로 상기 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는 별도의 수출실적 증빙 제출은 생략**(타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수출 비중은 수출신고필증 상의 '수출자 구분'에서 B, C, D*에 해당하는 수출로 **직수출 실적과 함께 한국무역협회에서 별도 확인**)

* 수출신고 수출자구분 : A-수출대행자가 제조자와 동일한 경우

B-수출대행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우

C-수출대행자가 완제품공급(원상태 공급을 포함한다)을 받아 수출한 경우

D-수출화주와 제조자가 본·지사 관계인 경우

- 간접수출실적 중 내국신용장(Local L/C) 및 구매확인서에 의한 외화 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 실적 증빙방법
 - 외국환은행 또는 KTNET의 '**로컬 등 기타수출 실적증명서**' 를 발급 제출
- ※ 주거래 외국환은행 또는 KTNET [유티레이드허브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 (<https://ulocal.utradehub.or.kr/index.jsp>) 접속 → '공급자 전용 서비스'의 '간접 수출실적증명'메뉴 클릭 발급(입금일 평균매매기준율의 달러금액 기준)
-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 수출 실적 증빙방법 (문의:1566-5114)
 - 수출입실적증명서 페이지(<https://membership.kita.net/cert/ncert/expImpResCertRequest.do>)에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수출대금이 입금된 이후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빙 등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담당자 승인 이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

- 외국인 외화영수부 국내수출자 공급물품 수출실적 증빙방법
 - 수출입실적증명서 페이지(<https://membershpkita.net/cert/ncert/exImpResCertRequest.do>)에서 '외국인 외화영수부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 제1항에 의거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 등을 보세구역으로 공급하는 경우
- 기타 간접수출 증빙방법
 - 기타 간접 수출실적은 입금일 기준, 평균매매기준율의 달러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 **주거래외국환은행의 실적 인정**을 받아 제출(해당 은행의 지점장의 직인이 없을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음)
 - 중계무역 : 수출금액(FOB) - 수입금액(CIF) = 가득액(마진)
 - 위탁가공수출 : 완제품수출금액(거래은행입금액) - (원부자재통관금액 + 현지공장가공임) = 가득액(마진)
 - 수탁가공수출 : 완제품(가공품)수출금액 - 원부자재수입금액 = 가득액

- 2) 기타 수출실적이 他 중소기업의 생산 제품의 대행수출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전체 수출 실적 중 20% 비중 이상 필수)
- ※ 직수출+기타수출 실적을 합산해서 타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 충족 가능
- ※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로컬수출)은 대행수출 실적으로 인정 불가**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국외에서 운영하면서, 직전년도('25)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 추가 제출서류

- 1) 유통산업발전법에 정의된 대규모 점포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정보(자율양식)
- 2)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년도('25)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재무제표

- ④ 국내·외에서 방송채널 및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수단을 1개 이상 직접 운영하면서 직전년도('25) 국외 매출액 또는 거래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자

□ 추가 제출서류

- 1) 국내·외 방송채널 및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수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자율양식)
(예시) 아마존 Seller Central 캡처자료 등 제출 가능
- 2) 직전년도('25년) 국외 매출액 및 거래액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서류

- ⑤ 최근 2년('24~'25년) 내 해외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직접 조달 납품한 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자

□ 추가 제출서류

- 1) 해외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조달 납품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로서 직전년도('25) 한국제품 교역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 이면서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자

□ 추가 제출서류

- 1) 재외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재외동포비자 등
- 2) 한국과의 교역 및 한국제품 구매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선적서류 및 매칭되는 인보이스 등
- 3) 단, 공통 제출서류 중 해외기업이 제출하기 어려운 법인/개인인감등록증 등은 생략하고 서명으로 대체 가능(*사업자등록증은 해외 국가 발급본 제출 등)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 동포”라 한다)

⑦ 농업·어업·수산업, 서비스업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 수출확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무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1)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 (6) 대중소기업 공동출자형 수출전문기업
- (7) 업종별 협회·단체의 무역자회사
- (8)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출자하여 설립한 무역상사
- (9) 기타 전문무역상사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주무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수출조직

□ 추가 제출서류

- 1) 상기 분야의 조합, 수출전문기업, 무역자회사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2) 주무 부처 장관의 추천서

3 제출서류 세부 서식 기재요령

① 2026 전문무역상사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온라인 신청서 작성)

1) ①신청업체정보란의 ‘지원자격신청구분’ 란은 전문무역상사 모집 공고 1p의 **전문무역상사의 지원자격 ① ~ ⑦중에** 신청기업이 해당하는 **지원자격의 ‘번호’ 중 하나를 선택**

*단, 지원자격 중 ⑦의 경우는 하위 1~9 중 해당하는 자격도 추가 선택(예, ⑦-3)

[전문무역상사 지원자격 신청구분]

- ① 전년도('25) 수출실적 또는 최근 3년간('23~'25)의 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他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의 수출* 비중이 20% 이상인 자
- ② 전년도('25) 또는 최근 3년간('23~'25)의 평균 수출 실적이 미화 1억 달러 이상인자로서 무역거래를 주로 영위하는 자
-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국외에서 운영하면서, 직전년도('25)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 ④ 국내·외에서 방송채널 및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수단을 1개 이상 직접 운영하면서, 전년도('25) 국외 매출액 또는 거래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자
- ⑤ 최근 2년('24~'25) 내 해외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직접 조달 납품한 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자
- ⑥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로서 전년도('25) 한국제품 교역 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자
- ⑦ 농업·어업·수산업, 서비스업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 수출확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무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6. 대중소기업 공동출자형 수출전문기업
 7. 업종별 협회·단체의 무역자회사
 8.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출자하여 설립한 무역상사
 9. 기타 전문무역상사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주무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수출조직

2) ①신청업체정보란의 ‘기업구분’ 란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협/단체, 기타 중 해당되는 항목 기입

3) ①신청업체정보란의 ‘업태’ 란은 무역, 제조, 무역+제조, 전자상거래, 홈쇼핑 중 해당되는 항목 기입

4) 신청업체정보 기업명(국/영문), 기업로고, 회사소개, 주소, 홈페이지 정보, 수출액, 주요 수출국가 및 품목 등의 정보는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기입 요망**

- 5) ②수출실적란의 ‘직수출(A)’ 란은 통관기준 수출실적으로 한국무역협회의 전산자료 실적(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 에서 직접 확인 가능)
- 6) ②수출실적란의 ‘로컬 등 기타수출 실적(B)’ 란은 로컬수출실적 중 내국 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 외화영수부 국내수출자 공급물품 등 **로컬 등 기타 수출 실적을 제출 증빙과 일치하도록 작성**
- 7) ②수출실적란의 ‘합계(C)’ 란은 직수출, 로컬수출 및 기타 수출 실적의 합산 실적을 작성
- 8) ②수출실적란의 ‘대행수출실적(C)’ 란은 他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의 수출 중
 1. 수출신고필증 상의 ‘수출자 구분’ 에서 B, C, D에 해당하는 수출
 2. 용역/전자적무체물 수출, 외화영수부 수출, 중계무역 등 기타 수출 실적을 **제출 증빙과 일치하도록 작성**(수출신고필증 상의 **대행수출**은 별도의 증빙 제출 없이 무역협회에서 집계하며, **정확한 실적을 모를 경우 공란**)
 ※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은 **대행수출 실적으로 불인정**
- 9) ②수출실적란의 ‘대행수출비율’ 란은 수출 합계(A+B)에서 대행수출실적(C)의 비율을 %로 작성
- 10) ③수출역량의 ‘수출 중인 국가’ 란은 전년도 기준 수출금액에 따라 순서대로 최대 10개 국가만 기입
- 11) ③수출역량의 ‘수출에 자신 있는 국가’ 란은 제조기업에서 대행수출을 의뢰받아 맡을 경우 수출 실적 달성에 자신있는 국가 순서대로 작성 (현재 수출 중인 국가 포함)
- 12) ③수출역량의 ‘주요 취급 품목군’ 란은 신청기업에서 취급하고 있는 품목군 중 수출액이 큰 순서대로 기입
 - * 품목군은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가죽, 섬유류,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기타
- 13) ③수출역량의 ‘수출 품목’ 란은 신청기업의 품목 중에 수출액이 큰 순서대로 기입(마스크, 김, 립스틱 등 세부 품목명 기입)

- 14) ③수출역량의 ‘수출에 자신 있는 품목’ 란은 제조기업에서 대행수출을 의뢰받아 맡을 경우 수출 실적 달성에 자신있는 품목 순서대로 작성 (현재 미취급 품목군 및 품목도 가능)
- 15) ③수출역량의 ‘소싱 희망 품목’ 란은 국내 제조기업으로부터 소싱해 대행수출 하기를 희망하는 품목을 우선순위대로 모두 기입
- 16) ③수출역량의 ‘해외 지사/법인 소재지역’ 란은 보유 중인 해외지사 및 법인의 국가 및 도시명 작성(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 17) ③수출역량의 ‘해외 네트워크 소재지’ 란은 수출 업무에 대한 협력 관계인 해외 파트너 등의 국가 및 도시명 작성
- 18) ④ ‘국내 제조기업 발굴 채널 및 방법’ 란은 국내 제조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보유 또는 이용하고 있는 수단 또는 단체 등 작성
- 19) ⑤ ‘기업 소개’ 란에는 500자 이내로 회사 소개 내용 작성

※ 전문무역상사 지정 신청서는 전문무역상사 또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공통 제출서류도 첨부파일 형태로 업로드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사항이 있는 신청기업만 온라인 제출

(끝)